

※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(2020.06.25 이후)만 인정됩니다

구분	필수	해당자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사본	본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(일자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 사항 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인감도장		-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- 발급일확인(용도:아파트계약용) / 본인발급용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서		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에 따라 해외체류 기간 확인 후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경우(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6.25일)까지)
	○		복무확인서		-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해당지역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
가점제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단독세대일경우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존속	-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사실 추가 증빙용.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비속	-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사실 추가 증빙용.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-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부양가족출입국 사실 증명서	직계 존비속	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의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세대원(부양가족)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: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6.25일)까지
	○		무주택소명서류	본인	-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
	○		당첨사실소명서류	본인	- 당첨사실 소명서류(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)
	○		배우자 분리 / 단독세대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배우자
		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		직계존속	-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대리인 신청시	○		당첨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		용도 : 아파트계약 위임용 [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]
	○		위임장	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	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